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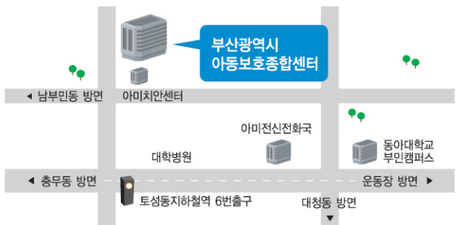
:: 아동학대 신고 관할지역 (10개구)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 소 재 지

•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 (아미동 2가 125번지)
• **전 화** | 051) **240-6300**, 팩스 051) **240-6345**
• **홈페이지** | http://adong.busan.go.kr

찾아 오시는 길



버스이용안내
대학병원 앞 | 1003, 123, 16 161, 70, 58-1
아미치안센터 앞 | 134, 190
센터앞 | 87

지하철이용안내
토성동역 (아미치안센터 쪽 300m)

STOP 아동학대
LOVE Children

STOP & LOVE 캠페인

STOP & LOVE 캠페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 국민 캠페인 입니다

아동학대 처벌규정

법	관 련 조 문	비 고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1.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1호)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4.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2호)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2호)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4호)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	7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호처분의 결정등 (제4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자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 적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개정 / 2012년 8월 5일 시행)

•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보다 잘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4.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5. 구급대원
6.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7.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등
8.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9.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초등·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1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응급구조사
17.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18.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밑줄 친 부분은 새로 추가된 직군
※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등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아동복지법 제75조 제2항)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Dynamic BUSAN

아동학대 신고 매뉴얼

Dynamic BUSAN

아동학대 신고절차 / 안내

1577-1391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우리주변에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 언 제 ?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 무 엇 을 ?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어 떻 게 ?

- **전 화** | 국번없이 **1577-1391** (아동상담전용전화)
  또는 **129** (보건복지콜센터), **112, 119**
- **인터넷** | http://adong.busan.go.kr (아동학대신고접수)
- **방 문** |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서구 까치고개로 183)

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제25조)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복지시설에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자, 보육시설의 종사자, 유치원의 장교직원 및 종사자, 학원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소방구급대의 대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 아 동 학 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의 유형

- **신체학대**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
- **정서학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 학 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 임**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유 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빠에게 매를 맞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영태

영태(가명, 9세)는 오늘도 아빠로부터 걸을 수 없을 만큼 매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고 더러운 환경에 방치되어 있어서 목숨까지 위협을 받았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이후, 아이는 그룹홈에서 보호받으면서 병원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고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5년간 새아빠로부터 성학대를 받은 선미

선미(가명, 16세)는 매일 밤마다 숨죽여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참아왔습니다. 새아빠로부터 5년간 성학대를 받으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끔찍한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 왔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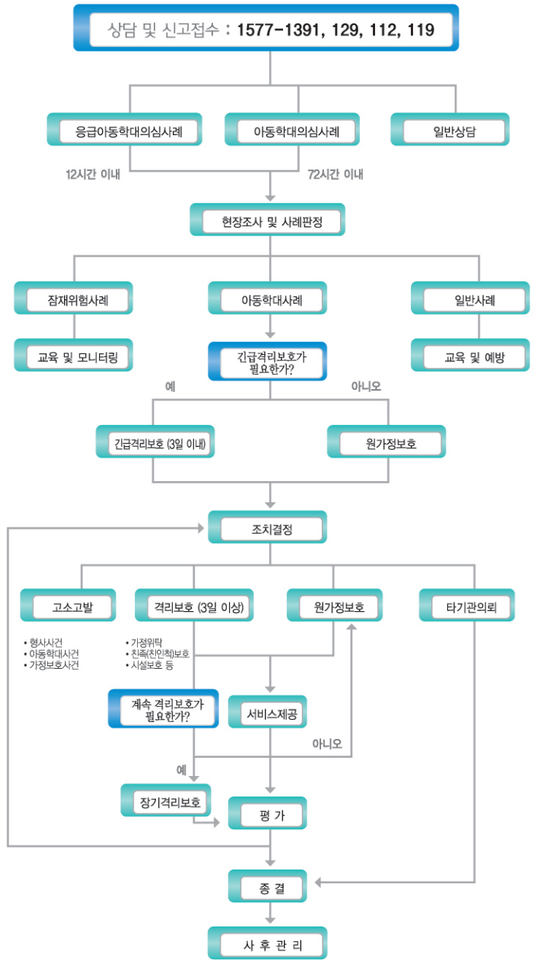


◀ 아동학대 신고절차 안내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BUSAN METROPOLITAN CITY CHILD PROTECTION CENTER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Busan Metropolitan city Child Protection Agency

학대피해아동 보호절차



:: 아동학대 신고접수

-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는 아동학대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통해 24시간 운영,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는 12시간 이내, 아동학대의심사례는 72시간 이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아동학대여부 및 학대위험정도를 파악합니다.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조치 및 학대피해아동의 긴급격리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구분하여 사례를 판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서비스를 계획, 제공하게 됩니다.

:: 조 치 결 정

- 사례판정 결과를 근거로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도모합니다.

::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 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대유발요인을 감소시켜 재학대 발생을 예방합니다.
-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기능을 강화합니다.

::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 아동 및 가족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고, 학대 위험 요소가 감소 또는 제거되었을 때 사례를 종결합니다.
- 사례종결 이후에도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이 달성한 진전을 강화시키고 증진된 기능을 생활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 학대피해아동 보호절차